

학부생우수논문상

제정 : 2022년 11월 25일
개정 : 2025년 8월 22일

제 1 장 상의 목적

제 1 조 우리 학회 춘·추계 학술대회에서 학술발표를 한 학부학생을 대상으로 우수발표자를 선정하여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장 수상 자격

제 2 조 ① 춘·추계 학술대회에서 학술발표를 한 학부학생으로 한다. ② 단, 우리 학회 회원인 경우 비회원에 우선할 수 있다.

제 3 장 수상자 선정

제 3 조 매회 학술대회 조직위원회에서는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학부학생을 대상으로 한 우수발표자 약간명을 선발하여 이사회에 추천한다.

제 4 조 수상자는 당해연도에 우리 학회에서 수여하는 각종 상과 중복 수상은 불가하다.

제 5 조 추천된 수상 예정자는 이사회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.

제 4 장 시상

제 6 조 시상은 상장 및 부상으로 이사회 결정에 따르며, 매회 학술대회에서 시행한다.

제 7 조 수상자가 시상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도 상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을 취소한다.

- 부 칙
1.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운영상의 세칙은 학회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 2. 본 규정은 2022년 11월 25일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.